



직장 내 차별과 추행

Discrimination and Harassment at Work

어떠한 종류의 직장 내 차별과 추행이 불법으로 간주 되나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당신의 고용을 거절하거나, 다른 고용인들과는 다른 고용규칙이나 조건을 당신에게 부과하거나, 추행하거나, 강등시키거나, 해고하는 경우에 불법으로 간주 됩니다.

- 인종
- 성별
- 피부색
- 신념
- 종교
- 임신
- 가족상태
- 국적(이 경우, 고용주는 당신이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증명을 요청 할 수는 있습니다.)
- 결혼여부
- 생활보호 대상의 여부
- 장애
- 나이
- 성적 정체성
- 유전적 정보
- 지역 인권위원회 회원

당신은 고용에 있어서 파산을 이유로 다른 차별을 받거나, 추행을 당하거나 해고 당할 수 없습니다. 파산은 당신이 고용되지 않을 수 있는 부분적인 이유는 될 수는 있으나, 파산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는 당신의 고용이 거부 될 수 없습니다.

직장 내 차별과 추행의 일반적인 예시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 다른 인종의 고용인들도 같은 훈련, 경력, 근무 실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인 고용인들에게만 승진이 이루어진 경우.
- 당신의 직장 동료가 당신을 인종차별적인 호칭으로 부르거나, 이에 대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직장 상사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 직장 상사와의 사적이거나 성적인 관계를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직장 상사가 데이트를 요청하거나 성적인 것을 요구하는 경우.
- 고용주가 결혼한 여성은 임신을 하거나 휴직을 할 것이라는 이유로 그들을 승진 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경우,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이 아이들 때문에 업무적 의무로부터 방해 받을 것을 이유로 고용주가 그들을 승진시키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



- 영어를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거나, 매니저가 당신에게 소리 지르는 경우.
- 당신이 그곳에서 20년 이상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56살이 되었을 때, 고용주가 당신을 '새로운 것을 배우기에는 너무 나이가 들었다'며 강등시키는 경우.

직장 내 차별과 직장 추행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당신의 인종, 성별, 종교를 이유로 업무적인 차별과 추행으로부터 대항하려면 그 사람에게 그러한 행동을 그만 둘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만약 그러한 행위가 지속되거나 그에 대하여 다시 재 요청을 할 것이 불편한 경우, 당신의 상사나 인사과에 고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서면으로 해야 하며 사본을 가지고 계십시오.

직장 내 차별과 추행으로부터 대처하는 방법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 직장 내 차별이나 추행으로 의심되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서면으로 적으세요.
- 시간과 날짜, 그리고 그러한 행위를 목격한 사람이 있으면 그들의 이름을 적으세요.
- 당시의 발언과, 대화를 적어 놓으세요.
- 차별이나 추행에 관하여 당신의 상사에게 고지하세요.



이에 대한 불만을 제기함으로써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당신이 불법적인 차별이나 추행의 피해자라는 것을 선의에 의해서 주장을 하는 경우 고용주는 이에 대하여 당신에게 보복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차별이나 추행을 고지한 이후에 해고통지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하여 소송 할 수 있습니다.

차별이나 추행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할 때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만약 차별이나 추행에 대하여 대항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하단의 기관에 전화하세요.

차별이나 추행에 대한 법적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일이 있는 이후 특정 기간 안에 제기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간은 당신이 주장하는 사안에 따라, 그리고 해당 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짧은 시간 안에 법적 주장이 제기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하단의 기관에 연락하세요.

Minnesota Department of Human Rights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Freeman Building	330 South 2 nd Ave., Suite 430
625 Robert St. North	Minneapolis, MN 55401
St. Paul, MN 55155	
	Phone: (612) 335-4040
Phone: (651) 539-1100 or 1-(800) 657-3704	TTY: (612) 335-4045
TTY: (651) 296-1283	www.eeoc.gov
http://mn.gov/mdhr/ (영어만 이용 가능)	(한국어 이용 가능)
	
Minneapolis Department of Civil Rights	
City Hall, Room 239	
350 South 5 th St	
Minneapolis, MN 55415	
Phone: (612) 673-3012	
TTY: (612) 673-2044	
www.ci.minneapolis.mn.us/citywork/civil-rights/commission.html	

본 자료서는 법률 정보일 뿐, 법률적 조언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조언을 위해서는 변호사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본 자료서는 1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업데이트 사항, 자료서 목록, 또는 다른 형식의 포맷에 대해서는 본 기관으로 요청해 주십시오.

© 2019 Minnesota Legal Services Coalition. This document can be reproduced and used for non-commercial personal and educational purposes only. All other rights reserved. This notice has to stay on all copies. Reproduction, distribution, and use for commercial purposes are strictly prohibited.